

하동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

「하동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하동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5. 5. 21.

하동군의회의회장 강 대 선

1. 조례명: 하동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

2. 제안이유

-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실종자와 그 가정의 신체적·정신적·경제적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다. 시행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라. 추진 사업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5조, 제6조)
- 마. 협력체계 구축·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4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9일 (목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하동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 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유무와 사유, 수정의견)
- 2)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

나. 의견제출 방법

- 1) 팩스: 055-880-2939
- 2) 하동군의회 홈페이지(<http://www.hdcl.go.kr>) 열린마당(의회에 바란다)
- 3) e-mail: jina927@korea.kr

붙임 1.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.

2. 하동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1부. 끝.

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: 하동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:

조례안 내용(조항)	찬 성 여 부		의 건	비고
	찬성	반대		

하동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와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실종자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가. 「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

나.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로서 소재 및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발견할 필요가 있는 사람

2. “드론”이란 「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체를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하동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.

제4조(시행계획 수립·시행) ①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해야 한

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
2. 실종자 발생 예방 대책
3.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 방안
4.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추진 사업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실종자 발생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
2. 드론 등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지원 사업
3. 실종자 조기 발견에 협조하는 수색대원 및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
4. 그 밖에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(예산 지원)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·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협력체계 구축·운영)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하동경찰서 및 관련 기관·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